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70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 강훈식 • 박홍배 • 송기헌

윤종군 · 김한규 · 임미애

김원이 · 남인순 · 박상혁

김성회 의원(10인)

제안이유

EU,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 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을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 및 IT 선두국가로 도약을 이룬 것처럼 중소기업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 전반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의 정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온실 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 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전담기관을 통하여 탄소감축가치 평가와 기업 탄소발자국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 지원에 활용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녹색경영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보제공, 진단 및 컨설팅, 금융, 전문인력 및 교육,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중소기업 간 협력, 상생협력 등을 지원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 사.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안 제23조).
- 아.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을 녹색경영 혁신형중소기업으로 확인하고 확인기업에 대하여 자금, 판로, 인력,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의 신속처리 등을 지원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 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3.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5.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6. "녹색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

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말한다.

- 7.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하 "녹색경영혁신기업"이라 한다)이 란 녹색경영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26조에 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기업을 말한다.
- 8. "녹색기술전문기업"(이하 "녹색기술전문기업"이라 한다)이란 녹색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9. "탄소감축가치"란 녹색경영을 통하여 감축될 것으로 추정되는 온 실가스의 총량을 가액(價額),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산정한 가치 를 말한다.
- 10.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이란 중소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설비 및 공정 개선, 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의 책무)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녹색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역량 향상,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녹색경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녹색경제를 말한다)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하

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체계 구축

- 제7조(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2.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인력, 금융, 기술개발, 기업 간 협력 등의 지원
 - 3.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
 - 4.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 및 녹색경영혁신지구 지정제도 운영
 - 5.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중소기업 녹색경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 녹색경 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녹색 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 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 ③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중소 기업의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 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 2.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금융·기술·인력·교육·디지털화·컨설팅 등 지원
- 3.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 운영 지원
- 4. 탄소감축가치를 산정하여 평가하는 모형의 개발 등 탄소감축가치 관련 조사·연구 및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 5.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의 측정 및 감축 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 6.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안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센터를 둘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

- 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을 받은 전담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영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 실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탄소감축가치의 평가 및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탄소감축가치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게 제15조에 따른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규모의 결정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지원(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의 측정 및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을 측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제13조(정보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탄소중립 관련 정책 등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 2. 전문가를 활용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3. 그 밖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진단 및 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진단 및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공정이나 설비를 개선하는 등 녹색경영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녹색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투자, 유동화회 사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6조(전문인력 및 교육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인식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있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녹색경영 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녹색기술 개발 및 이전·확산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 등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5. 그 밖에 녹색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기술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하여 녹색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과 녹색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디지털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디지털화 기반 조성과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 및 활동 등을 위하 여 소그룹을 결성·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한 조합이나 협회 또는 단체 등을 결성·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상생협력 지원)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이하 "상생협력"이라 한다)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상생협력 기반 조성
 -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발굴 및 수행
 - 4.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5. 그 밖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사항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 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는 경우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여 반영하 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시급업종 등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이 시급하거나 녹색경영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녹색기술의 이용·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13조 부터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녹색기술전문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기술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녹색기술전문기업의 창업 지원
 - 2. 녹색기술전문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3. 녹색기술전문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 4. 그 밖에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녹색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제13조에 따른 정보 제공

- 2. 중소기업과 녹색기술전문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신청 및 평가 등 관리
- 4. 탄소감축가치 평가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관련 자료의 저장, 관리 및 활용
- 5. 그 밖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 ②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홍보 및 포상) ① 정부는 중소기업 녹색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또는 중소기업 탄소발 자국 감축 우수 사례 발굴·홍보,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세미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또는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감축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녹색경영혁신기업 육성 등

- 제26조(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경영 혁신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녹색경영 혁신 필요성 및 목표 수준
- 2. 녹색경영 혁신을 위하여 활용하는 기술, 방법 등 혁신의 내용, 실시기간과 기대효과
- 3. 녹색경영 혁신에 필요한 재원과 조달계획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하여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 기업의 녹색경영 혁신 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제 4항에 따른 이행 여부와 실적 조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 경영혁신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 2. 녹색경영혁신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제재, 국세체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4. 녹색경영혁신기업이 스스로 확인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① 정부는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하여 자금, 판로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녹색경영 혁신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9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은 「교 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

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경영혁신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② 교육공무원등의 휴직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은 "녹 색경영혁신기업"으로 본다.
- ③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녹색경영혁신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 자 하는 경우
-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녹색경영혁신기업 주식의 인수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1조(부담금의 면제) ①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부담금을 면제한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3.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규제의 신속 처리) ① 녹색경영혁신기업은 녹색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공정의 개선,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의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녹색경영혁신기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을 신 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33조(수수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4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 및 이행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소기업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도록 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 제36조(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3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